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 6.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업기반과)

1. 개정(제정) 이유

현행 「방조제 관리법」에서는 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 이의신청하고, 20일 이내 적합여부를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기간과 그에 대한 적합여부 회신 기간이 타법령에 비해 짧아 각각 기간을 연장(20일 → 30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자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안 제14조제4항)

- 이용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하도록 규정(20일 이내 → 30일 이내)

나. 이의신청에 대한 적합여부 회신(안 제14조제5항)

- 이의신청 받은 자가 그 적합 여부에 대한 회신 기간 연장을 연장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규정(20일 이내 → 30일 이내)

3. 관련 예상쟁점

가. 관계부처 입장 : 해당없음

나. 관련 단체 등 입장 : 해당없음

다. 쟁점 대응방안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

- 1) 제·개정안 확정 : '21년 6월
- 2) 관계부처협의 : '21년 6월
- 3)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21년 7월 ~ 8월
- 4) 법제처 제출 : '21년 8월
- 5)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21년 9월
- 6) 관보게제 및 공포 : '21년 9월

나. 규제관련 검토사항 : 해당없음

다. 재정수반 여부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개정안, 별첨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3) 법안담당

직 위	성 명	사무실 전화	HP	E-mail
식량정책관	박수진	044-201-1801	010-2318-1367	psjin@korea.kr
식량정책과장	박재수	044-201-1851	010-2770-5589	jspark123@korea.kr
사무관	임정근	044-201-1853	010-6325-1806	samsom@korea.kr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중 “20일”을 각각 “30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이용자 부담) ① ~ ③ (생 락)	제15조(이용자 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입 고지서를 받은 자는 부담금 부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u>20일</u> 이내에 부담금 납입을 통지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 ----- ----- ----- <u>30일</u> ----- -----.
⑤ 제4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u>20일</u>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 ----- <u>30일</u> ----- ----- -----.